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459 2023. 12. 12.(화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29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덕진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O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2조)
- O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.
- 충북도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, 본 조례 제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('17 ~ '23. 6.)>

(단위: 명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3.6월
합계출산율	1.24	1.17	1.05	0.98	0.95	0.87	0.87
출생아 수	11,394	10,586 (△808)	9,333 (△1,253)	8,607 (△726)	8,190 (△417)	7,452 (△738)	3,930

※ 자료: 통계청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구분	조 문	규 정 사 항	구분	조 문	규 정 사 항
총칙	제1조	목적	실체 규정	제9조	지원사업
	제2조	정의		제10조	출산육아수당
규정	제3조	도지사의 책무		제11조	다자녀카드 발급 등
	제4조	다른 조례와의 관계		제12조	교육 및 홍보
실체 규정	제5조	입장료 등 감면	보칙 규정	제13조	사업의 위탁
	제6조	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·운영		제14조	도민참여 확대
	제7조	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·운영		제15조	포상
	제8조	임산부의 날	부칙	시행일, 다른 조례의 개정, 적용례	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규정으로,
- "임산부" 및 "난임"에 대한 용어 규정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5)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규정하였고,
- "다자녀가정"은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와 동일하게 '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'으로 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O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산부 예우를 위한 도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.

^{5) 「}모자보건법」제2조(정의)

^{1. &}quot;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^{11. &}quot;난임(難妊)"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- 안 제5조는 도, 시·군 및 도 설립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문화·체육·관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 동반자에 대해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본 사업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세부 규정(임산부의 동반자 범위 및 감면율 등)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.
- 안 제7조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같은 조 제2항의 경우, '대규모 점포, 병원, 은행 등 민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'는 임의 규정을 두었음.
- 이는 현행법령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'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'는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, 법적 문제는 없음.
- O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생·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임.
- 안 제10조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9조에 있던 것을 본 조례 제10조로 옮긴 것임.
- 안 제10조는 출산·양육에 관한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인 만큼 포괄적이고 기본적 취지의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에 두는 것보다는 출산·양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단, 조례 간 조항을 옮길 경우에는 현행 조례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옮겨가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되는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데, 여기서는 후자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조례안 부칙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- 안 제11조는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음.
- 본 사업은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한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자녀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.
- 안 제13조는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·단체등에 위탁해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음.
- 안 제14조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민·관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- 또한 「모자보건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등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된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.
- 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구축된 만큼 조례에 따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・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충청북도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 - 2. "출생·양육 지원"이란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생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.
 - 3. "난임"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4. "다자녀가정"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 이라 한다)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.

제2장 임산부 예우

- 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서 설치 ·관리하는 문화·체육·관광시설(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"공공시설"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(이하 "입장료등"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, 「지방공기업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・출연 기관의 장(이하 "시장·군수등"이라 한다)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·운영)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- 제7조(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우선주 차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대규모 점포, 병원,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- 제8조(임산부의 날) 도지사는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출생·양육 지원

- 제9조(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결혼 및 출생·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
 - 2.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
 - 3.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 - 4.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
 - 5.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사업
 - 6. 그 밖에 출생·양육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0조(출산육아수당) ① 도지사는 출생·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망·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・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, 신청인이 거짓이나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- 제11조(다자녀카드 발급 등)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다자녀카드 발급,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- 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- 제13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4조(도민참여 확대)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,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포상)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3조(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

-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 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- 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의2(임산부의 날)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O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O 사 유

- 금번 조례 제정안은 합계출산율,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도내 임산부 및 출생·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제정이 요구됨
- 본 제정 조례안 조항은 권고 형식의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 질적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, 금액,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 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
- 이에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O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 봉